

<p align="center">'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</p> <p align="center">1998. 9. 도시관리위원회</p> <p>1. 경과</p> <p>가. 제안자 및 제안일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안자 : 서울특별시장 ○ 제안일자 : 1998.9.1(의안번호 65) <p>나. 회부일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998.9.2 <p>다. 상정일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108회 임시회 제4차 도시관리위원회 (1998.9.18)상정, 의결 <p>2. 제안설명의 요지(주택국장 : 양 갑)</p> <p>가. 제안이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의거 '98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. <p>나. 주요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98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집행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사업인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구역내 시유지를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 및 점유자에게 적기에 매각하고 용도폐지된 공공시설을 무상양도함으로써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 ○ 처분 : 시유지 매각 4개구역 20필지 8,319㎡ 5,041,160천원 시유지 무상양도 3개구역 239필지 12,007㎡ 4,640,803천원 <p>3. 검토보고요지(전문위원 : 양재대)</p> <p>○ 본 안건은 '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집행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사업인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유재산을 매각 또는 무상양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의거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하는 시안으로서,</p> <p>'98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에 계상된 재산은 첫째, 재개발구역내 시유지를 재개발조합 및 점유자에게 매각할 재산으로 총 1-3구역 등 4개구역의 20필지이고 면적은 8,319㎡인데 금액으로는 5,041,160천원이</p>	<p>둘째, 재개발구역내 용도폐지된 공공시설을 시행자에게 무상양도 하는 재산으로 홍제14구역 등 3개구역의 239필지이고 면적은 12,007㎡인데 금액으로는 4,640,803이 계상되어 있음.</p> <p>○ 도시계획사업인 주택재개발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사업구역내 시유지를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 및 점유자에게 적기에 매각하고 용도폐지된 공공시설을 시행자에게 무상양도할 계획인 동 변경계획(안)은 공유재산 매각관련 규정과 공유재산의 무상양도관련 규정에 따라 동의를 요청한 사항이므로 IMF체제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장이 제출한 계획안대로 동의함이 가능 것으로 사료됨.</p> <p>4. 토론요지</p> <p>○ 생략</p> <p>5. 소위원회 심사내용</p> <p>○ 소위원회 구성 없음.</p> <p>6. 수정안의 요지</p> <p>○ 수정안 없음.</p> <p>7. 심사결과</p> <p>○ 원안가결</p> <p>8. 기타 필요한 사항</p> <p>○ 없음</p> <p align="right">서울특별시주택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주택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0조제1항제4호중 "기타출연금, 보조금, 차입금"을 "차입금"으로 한다.</p> <p align="center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 align="right">'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(안)</p> <p>'98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집행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사업인 주택재개발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사업구역내 시유지를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 및 점유자에게 적기에 매각하고 용도폐지된 공공시설을 무상양도함으로써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'98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</p>
--	---